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6
----------	------------

제안연월일 : 2018년 6월 2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의 규정에 신설한 용어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정의 규정에 맞추어 변경함(안 제7장).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 기준을 명시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7장의 제목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 제18조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를 “저축액의 150%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p>
<p>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신설></u></p>	<p>제4조(지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자산형성지원사업</u></p> <p>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 <u>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u>를 둔 장애인으로서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9호에 따른</p>	<p>제4조(지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p> <p>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u>시장은 서울특별시</u>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9호에</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 (생략)	<p><u>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p>	<p><u>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제17조 다음에 “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삽입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u></p> <p>제4조(지원)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u>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① <u>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제18조</u> (생략)</p>	<p>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u>제19조</u> (현행 제18조와 같음)</p>